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4. 12. 19.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4년 11월 13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4년 11월 19일

라. 상정일자 : 제185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2014년 12월 11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안전건설국장 김숙희)

가. 제안이유

- 적정한 도로관리 및 도로 자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도로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등 도로법의 개정에 따라 각 법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으로 법조항이 전면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는 각 법조항 전면개정
- 도로법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 (안 제7조)
 - 점용료의 감면(법 제68조 및 시행령 제73조 관련)

- 도로법 시행령과 중복되는 점용료 산정기준 삭제
 - 시행령 제69조 제1항 관련 「별표 3」 적용
-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점용료 산정기준 하향 조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이태선)

-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조례 제2조 외 7개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개정된 상위 법령 조문에 맞춰 변경하고,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산정기준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점용료 감면에 관한 조항은 도로법령 기준을 적용하고자 삭제하였고, 서울시 조례에 따라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점용료 산정기준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에서 0.01을 곱한 금액 으로 하향 조정함.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이 전부개정(2014. 7. 15 시행)되고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가 2014. 10. 20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도로점용허가, 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조정 등과 관련된 인용조문을 법령체계에 맞게 변경하고,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과 감면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토록 하여 도로점용 허가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28 호
----------	--------

제출연월일 : 2014. 1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적정한 도로관리 및 도로 자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도로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등 도로법의 개정에 따라 각 법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으로 법조항이 전면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는 각 법조항 전면개정
- 나. 도로법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 (안 제7조)
 - 점용료의 감면(법 제68조 및 시행령 제73조 관련)
- 다. 도로법 시행령과 중복되는 점용료 산정기준 삭제
 - 시행령 제69조 제1항 관련 「별표 3」 적용
- 라.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점용료 산정기준 하향 조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 (2) 부패영향평가 : 평가실시(의견없음)
 -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실시(의견없음)
-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4.10.16~11.5, 20일간)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및 같은 법**”을 “**및**”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 제5항제9호**”를 “**「도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로 한다.

제3조 중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41조제2항** 및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를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에서 정하지 않은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제69조제1항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38조** 및 **영 제28조**”를 “**법 제61조** 및 **영 제54조**”로, “**법 제94조**”를 “**법 제7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우에 대한**”을 “**경우의**”로 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이자로 한다**”를 “**이자를 붙인다**”로 한다.

제6조 중 “**해당 년도의 점용료는 영 제44조 별표 3**”을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영 제69조제3항 별표 4**”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후단 중 “제22조”를 “제23조”로 한다.

제9조제1항 후단 중 “법 제42조제3호의 규정”을 “법 제68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하거나”를 “않거나”로, “미리”를 “사전에”로, “법 제84조”를 “법 제97조”로, “점용료는”을 “점용료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되 돌려주어야 한다”를 “반환한다”로 한다.

제10조 중 “법 제101조”를 “법 제117조”로, “영 제74조 별표 5”를 “영 제105조 별표 7”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38조”를 “법 제61조”로, “부령 제42조제1항제2호”를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7조”를 “법 제68조”로 한다.

제14조 중 “조례”를 “조례의”로 한다.

조례의 별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점용료 산정기준 (제3조 관련)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단위:원)
		점용	기간	
1.영 별표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노점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2. 구청장이 시장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정· 공고·고시한 재래시장의 차양시설·비가리개 시설·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01을 곱한 금액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 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 물건이나 그 밖의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5항제9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 style="padding-left: 20px;">① ② ③ (생략)</p> <p>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및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단서 신설></p> <p>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 징수) ① 법 제38조 및 영 제2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점용하는 자에게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94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 징수한다.</p>	<p>제1조(목적) ----- ----- 및----- ----- ----- ----- -----.</p> <p>제2조(도로점용허가) ----- -----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 ----- -----.</p> <p style="padding-left: 20px;">① ② ③ (현행과 같음)</p> <p>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 --. 다만, 별표에서 정하지 않은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제69조제1항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 징수) ①법 제61조 및 영 제54조----- ----- ----- ----- 법 제72조-----.</p>

② (생략)

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④ (생략)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나누어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제3항에 따른 이자로 한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나누어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6조(점용료 등의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별표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영 제44조 별표3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점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② (현행과 같음)

③ ----- 경우의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이자를 붙인다. -----

-----.

제6조(점용료 등의조정) -----

----- 해당연도의 점용료
는 영 제69조제3항 별표 4-----
-----.

<삭제>

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제24조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2.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또는 이와 비슷한 시설로서 부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4.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시장, 시장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

2.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

3.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부령에서 정하는 비율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

4.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점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점용물의 종류란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점용료 감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따라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2. 공사용 재료는 공사 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한의 면적
3. 굴착부분은 굴착 승인된 면적

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다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 부징수 및 반환) ① 징수하여야 하는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8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③ 잘못 납부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

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

----- 제23조-----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 부징수 및 반환) ①

----- 법 제68
조제3호-----

② -----
----- 앞거나-----
----- 사전에 -----
----- 법 제97조-----

----- 점용료를 -----

③ -----

환하는 경우에는 잘못 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되돌려주어야 한다.

----- 반환한다.

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 구청장이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74조 별표5의 기준에 따른다.

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 -----
법 제117조-----
----- 영 제105조
별표 7-----.

제12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38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부령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
-----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
항제2호-----.

② 수수료의 감면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 법 제68조-----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 조례의 -----
-----.

현행				개정안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단위:원)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단위:원)
		점용	기간				점용	기간	
1. 전주·공중전화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1,850	1. 영별표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단자함, 박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세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7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4,2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전력구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시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외경 0.1미터이하	길이 1미터	1년	1,150	2. 구청장이 시장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지령·공고·고시한 재래시장의 차양시설·비가리개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01을 곱한 금액
		외경 0.1미터초과 0.2미터이하			2,400				
		외경 0.2미터초과 0.4미터이하			4,850				
		외경 0.4미터초과 0.6미터이하			7,250				
		외경 0.6미터초과 0.8미터이하			9,650				
		외경 0.8미터초과 1.0미터이하			12,100				
		외경 1.0미터초과 2.0미터이하			18,100				
		외경 2.0미터초과 3.0미터이하			30,150				
		외경 3.0미터초과			42,25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카)압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외경 0.1미터이하				
	외경 0.1미터초과 0.2미터이하		3,600						
	외경 0.2미터초과 0.4미터이하		7,200						
	외경 0.4미터초과 0.6미터이하		10,850						
	외경 0.6미터초과 0.8미터이하		14,400						
	외경 0.8미터초과 1.0미터이하		18,100						
	외경 1.0미터초과 2.0미터이하		27,100						
	외경 2.0미터초과 3.0미터이하		45,200						
	외경 3.0미터초과		63,250						

3. 광고탑·광고판·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현수막·시설안내표지·이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광고탑·광고판·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	1일	400
		기타	표시면적 1㎡	1년	122,000
	돌출간판		1개	1년	58,400
	시설안내표지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임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	1일	400
아 치	기타	도로횡단	표시면적 1㎡	1년	244,000
		기타	표시면적 1㎡	1년	122,000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을 곱한 금액
	4층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진·출입로	자동차관리시설(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등) 및 부설주차장 10년 이상 위에 해당되지 않는 차량진출입로	표시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0를 곱한 금액	
기타		표시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6을 곱한 금액	
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표시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3층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육교상가·기타		표시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7를 곱한 금액
	노점			토지가격에 0.007를 곱한 금액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관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골작부분 기타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	1일	400
	기타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구청장이 시장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정·공고·고시한 채래시장의 차양시설·비가리개 시설·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01를 곱한 금액	
11. 제1호 내지 제10호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위탁판매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비 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에는 매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광고탑, 광고관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미만은 절사한다.
5.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전기통신관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7. 지하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위 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